

감리지적사례 FSS/2106-13 : 매출채권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09.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부실거래처(前 재무담당임원이 설립)에 대한 자금유출액 및 임직원 횡령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동 금액을 임의로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부실 거래처 및 임직원에게 유출된 자금의 회수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는 것처럼 회계기록을 조작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거래형태

<회사의 회계처리 사례>

- 일반적인 상거래와 무관하게 받을어음이 증가하며 회사의 예금이 유출되는 이상거래가 식별됨

- 최초 매출시
분개없음
- 받을어음 증가
차) 받을어음 XX 대) 보통예금 XX

<(예시)정상적 상거래의 회계처리>

- 정상적 상거래의 경우 매출 발생 시,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며 추후 받을어음 등으로 회수되며 외상매출금이 감소하여야 함

- 최초 매출시
차) 외상매출금 XX 대) 매출액 XX
- 받을어음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차) 받을어음 XX 대) 외상매출금 XX

또한, 회사는 실제 거래처 담당자와 무관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채권조회서를 대리회신 하도록 하였으며, 임시로 타 업체로부터 빌려온 어음을 회사 소유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및 일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동 금액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회사는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및 일부 임직원에게 유출된 자금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정상적인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자산(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게 동 자금을 상환할 의도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회사가 동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 및 받을어음 실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① 회사가 제시한 거래처 주소의 적정성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② 채권조회서를 감사인이 직접 회수하지 않고 회사 팩스를 통해 회수된 사본을 회사 담당자를 통해 전달 받았으며, ③ 회수된 채권조회서 사본의 진위 여부에 대해 거래처 담당자와 확인하는 절차 등을 누락하였고, 받을어음(전자어음) 실사를 위해 감사인이 직접 은행 웹사이트나 은행 조회서 등을 통해 회사보유 어음내역을 조회하지 않고, 회사가 은행 웹사이트에서 추출한 뒤 보유 어음 내역을 조작한 엑셀파일(회사는 은행 웹사이트에서 추출한 엑셀파일에 허위의 전자어음 내역을 추가하여 감사인에게 제시)과 회사가 제시한 받을어음 명세서를 대사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감사절차(예: ①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효한지 여부, 담보 실행을 통한 회수 가능 여부 검토, ② 기증 회수내역이 있는 경우 은행거래내역, 어음만기일 현금회수내역 등 입금증빙 확인)를 누락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자금·회계업무를 분리하고 장기간 동일인이 수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매출채권 계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금유출 거래 등의 비정상적인 분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계처리시스템 상 통제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은 회사의 비정상적인 분개 입력여부 등 확인을 위한 Journal Entry Test, 채권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조회절차 실시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한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